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8. 23(목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	담당자	과장 김도곤, 사무관 좌명한(☎ 044-201-4219, 4223)
	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		과장 정창욱, 사무관 박민영(☎ 044-200-4842, 4850)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국토부·공정위 진에어 결재 문서조사 책임 핑퐁” 보도 관련

-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조양호·조원태가 진에어에서 공식 업무권한이나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문서를 결재해온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(5.18)한 바 있으며,
 -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장계열사, 부당 내부거래 등 한진그룹 전반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.
- 아울러, 국토부는 권한 없는 자의 결재 등 진에어의 비정상적 경영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등 수익적 처분을 일체 제한하기로 결정·발표(8.17)한 바 있으며,
 -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의 경영문화 개선대책*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.

*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등

< 보도내용 (8. 23, 조선비즈) >

- ◆ 국토부·공정위, ‘조양호, 조원태 진에어 결재문서’ 위법성 조사 책임 ‘핑퐁 중’
 - 국토부와 공정위가 조양호, 조원태의 권한없는 결재에 대해 3개월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
 -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유지를 결정할 때, 진에어 결재 문서의 위법성 문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배제
 - 공정위 관계자는 “해당 문서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중순 이후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”고 밝힘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좌명한 사무관(☎ 044-201-4223), 공정거래위원회 박민영 사무관(☎ 044-200-485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